

의한 사업장에” 를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8 】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1조 (목적)중 “법 제84조”를 “법 제92조”로
동법 시행령 “제26조의2”를 “제50조의2”로,
- 동조례 제2조 (부과대상) 제1호중 “법 제10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 “제13조
제2항”을 “법 제23조제2항”으로, 제2호중 “법 제22조(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
를 포함한다)”를 “법 제35조(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, “제31조
제1항”을 “제47조제1항”으로 제3호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49조제3항”으로 개정.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법 제84조”를 “법 제92조”로 하고, “동법시행령 제26조의 2”를 “동법시행

령 제50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(부과대상) 제1호중 “법 제10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, “제13조제2항”을 “제23조제2항”으로 하고,

제2호중 “법 제22조(제30조제2항)”을 “법 제35조(제46조제2항)”으로, “제31조제1항”을 “제47조제1항”으로 하며,

제3호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4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【 9 】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 출 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◦ 경영수익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기금 조성의 신규재원 추가 삽입이 필요함.

주요골자

◦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3조 (투자기금의 조성)에 개발부담금 항목을 추가 신설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(투자기금 및 조성) 제2항중 “제4호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